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강제실종보호협약에 따른 이행법률 마련>
▣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3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제정안의 취지 ····· 3

2.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경과 ····· 3

3. 제정안의 심사경과 및 체계 ····· 8

4. 조문별 검토 ····· 9

가.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 9

나. 강제실종범죄 관련 적용범위(안 제4조) ····· 12

다. 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안 제5조～제6조) ····· 13

라. 강제실종범죄(안 제7조～제12조) ····· 15

마. 상급자의 책임등, 형의 감경(안 제13조～제14조) ····· 16

바. 강제송환 등의 금지(안 제15조) ····· 19

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제16조) ····· 20

아. 기타 및 부칙 ····· 22

※ 참고자료 ····· 23

1.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한역본) ····· 23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4.
3. 회부연월일 : 2024. 7. 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37조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더 이로운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

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강제송환 등의 금지 원칙(안 제15조).

바.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의 구제의무(안 제17조).

아. 아동의 보호(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2.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경과

○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UN)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1] 우리나라는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고, 2023. 1. 4.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 협약 가입 기탁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2월 3일부터 발효되었음.

1) 시민적 · 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보호협약으로, 대한민국은 이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미가입상태임.

<주요 유엔 인권협약 목록 및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우리나라 (발효)	북한	미국	일본	중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66.12.16 (76.3.23)	90.4.10 (90.7.10)	○	○	○	x (서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66.12.16 (76.1.3)	90.4.10 (90.7.10)	○	x (서명)	○	○
인종차별철폐협약	65.12.21 (69.1.4)	78.12.5 (79.1.4)	x	○	○	○
여성차별철폐협약	79.12.18 (81.9.3)	84.12.27 (85.1.26)	○	x (서명)	○	○
고문방지협약	84.12.10 (87.6.26)	95.1.9 (95.2.8)	x	○	○	○
아동권리협약	89.11.20 (90.9.2)	91.11.20 (91.12.20)	○	x (서명)	○	○
장애인권리협약	06.12.13 (08.5.3)	08.12.11 (09.1.10)	○	x (서명)	○	○
강제실종보호협약	06.12.20 (서명식)	23.1.4. (23.2.3.)	x	x	○	x
이주노동자권리협약	90.12.18 (03.7.1)	미가입	x	x	x	x

○ 동 협약은 강제실종에 관한 범죄 및 그에 대한 처벌, 범죄인 인도 및 국제공조 등을 정하는 제1부(제1조～제25조), 협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인 강제실종위원회 등을 정하는 제2부(제26조～제36조), 협약의 발효요건 및 가입 등을 정하는 제3부(제37조～제45조)로 구성됨[참고자료].

〈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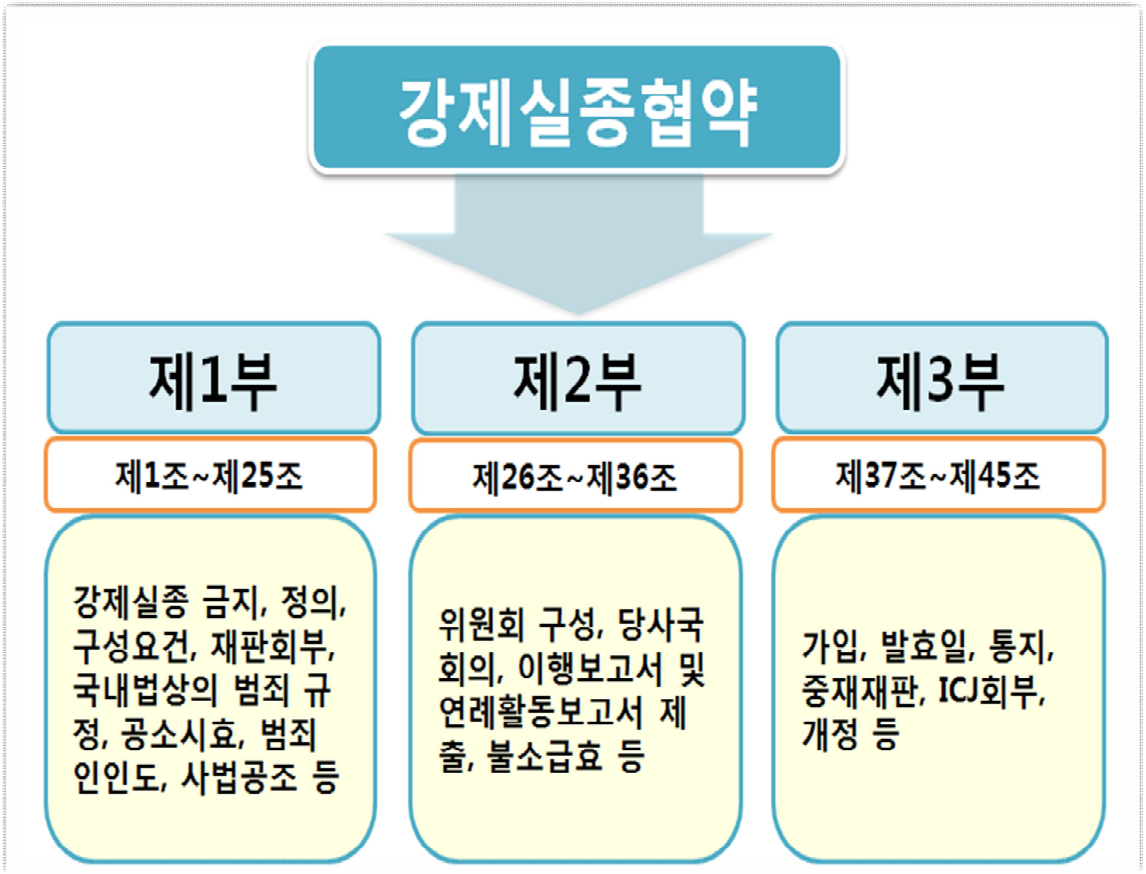

※김영석, "UN 강제실종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검토 최종보고서", p.5

○ 협약의 구성 및 각 조문의 요약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강제실종방지협약 개요 및 규정 요약 〉

부(Parts)		조(Articles)
전문		강제실종문제에 대해 국제인권법,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형사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일정한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주목
제1부 (강제실종 정의, 당사국의	▪강제실종의 정의 및 범죄화 (제1~7조)	**제1조**(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2조**(강제실종의 정의), **제3조**(당사국의 수사 및 책임자 재판회부 조치 등), **제4조**(강제실종이 당사국 형법상 범죄 규정 조치), **제5조**(광범위하고 체계적 강제

부(Parts)		조(Articles)
형법 상 조치 등)		실종 실행의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 **제6조**(당사국의 강제실종 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조치), **제7조**(당사국의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형벌조치)
	▪강제실종에 관한 형사책임과 사법공조 (제8~15조)	**제8조**(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조치 등), **제9조**(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 **제10조**(강제실종 범죄 용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강제실종 범죄 용의자의 관할국 인도 등), **제12조**(강제실종을 당한 자의 관할기관 보고 권리 및 관련 필요 조치), **제13조**(강제실종 범죄와 정치적 범죄와의 관계, 범죄인인도 조약 간의 관계), **제14조**(당사국 간의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한 사법공조), **제15조**(당사국 간의 강제실종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상호 지원)
	▪강제실종 방지 조치 (제16~23조)	**제16조**(당사국의 강제실종 가능성이 큰 국가에 대한 사람의 인도 또는 범죄인 인도 금지), **제17조**(비밀구금 금지와 관련한 당사국의 조치), **제18조**(자유박탈자의 친인천 등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 등), **제19조**(강제실종 관련 수집정보의 목적이외 사용금지), **제20조**(자유박탈자의 친인척 등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의 예외), **제21조**(당사국의 자유박탈자에 대한 석방조치), **제22조**(자유박탈자에 대한 정보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조치), **제23조**(자유박탈자 구금과 처우에 관한 법집행 요원 등에 대한 교육 등)
	▪배상과 어린이 보호 (제24~25조)	**제24조**(강제실종 피해자의 정의 및 배상받을 권리 등), **제25조**(강제실종 아동의 불법이동 등의 행위에 대한 당사국 형법상 필요 조치 등)
제2부 (강제실종위원회의 구성, 기능, 권한 등)		**제26조**(강제실종위원회 구성 및 자체 절차규칙 제정권 등), **제27조**(위원회 업무 평가), **제28조**(위원회의 타 기관과의 협력), **제29조**(각 당사국의 의무이행 조치 관련 보고서의 위원회 제출 등), **제30조**(실종자 수색관련 사항의 위원회 제출 및 위원회의 관련 정보 제공), **제31조**(위원회의 진정 접수, 심리 권한에 대한 당사국의 승인 선언 등), **제32조**(당사국의 위원회 권한 승인 선언 및 미선언 당사국의 진정처리 등), **제33조**(위원회의 당사국 방문 및 조사 등), **제34조**(위원회의 강제실종 징후 등에 대한 국제연합총회 주의

부(Parts)		조(Articles)
		환기), **제35조**(위원회의 강제실종에 관한 권한의 효력발생 시기), **제36조**(위원회의 연례활동보고서의 국제연합총회 제출 등)
제3부 (협약의 효력 등)		**제37조**(협약의 효력에 도움이 되는 규정 등), **제38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제연합회원국의 서명), **제39조**(협약의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과 발효), **제40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의 가입 당사국에 대한 통지 내용), **제41조**(연방국가에서 협약의 적용 지역), **제42조**(분쟁의 중재판부 회부 및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건 등), **제43조**(협약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한 당사국의 방문 허가와의 관계), **제44조**(당사국의 협약 개정안 제안 관련), **제45조**(협약의 정보 언어, 협약의 국제연합사무장에의 기탁과 인증등본의 송부)

※주: 1. 강제실종협약의 각 조와 부는 조제목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UN 강제실종협약 가입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2019.12.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주최)와 「강제실종방지협약 주요 당사국의 국내법 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2020. 9,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등 참고하여 각 부와 조의 주요내용을 괄호안에 요약하였고, 제1부의 내용을 보다 세분하여 구분하였음.

○ 한편,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국내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입법 방식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국의 강제실종 범죄화 유형 〉

구분	강제실종 범죄화 방식	국가
1	▪ 기존 일반형법 규정을 통한 비독립적 범죄화 - 추가 입법 조치 없이 기존 형법 등을 적용하여 강제실종 행위 처벌	독일[1], 일본, 벨기에 등
2	▪ 일반형법 개정을 통한 독립적 범죄화 -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실종 독립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협약 규정에 맞추어 수용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3	▪ 특별형법 개정을 통한 독립적 범죄화 - 국제형사법이나 국제형사재판소 협력법 개정	네덜란드, 우루과이 등
4	▪ 단독 이행법률 제정을 통한 독립적 범죄화	멕시코(유일)

※주: 1. 독일은 강제실종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
자료: 법무부

3. 제정안의 심사 경과 및 체계

○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 처음 발의[2]되었으나, 소위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이 발의[3]되어 소위 의결[4]을 거쳤으나, 이후 전체회의에서 일부 반대의견[5]이 있어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6].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의결을 거쳐 마련한 대안과 동일한 안임.

---

2) [202339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2019. 10. 31. 발의)

3) [2107371]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2021. 1. 14. 발의)
[211579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2022. 5. 30. 발의)

4)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1. 10) 의결(대안반영폐기)
- 법무부 수정안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대안을 마련하였음.

5)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1. 24.) 회의록 참조
(김영배위원) 법의 대상 및 정의 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① 제2조의 정의상 강제실종의 개념이 축소되었다는 점, ② 제3조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피해자를 직계가족에만 한정하는 등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④ 제13조의 상급자의 책임이 협약보다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등이 있음.

6) 전체회의의 찬반토론에서 김영배위원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 의견이 있었음.
(정점식위원) ①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북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국가단체' 개념이 들어간 것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② 피해자의 범위에 당사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범위를 추가로 더 넓혀야 한다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음.
(유상범위원) 제13조에 상급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한 부분 관련하여 영미법계와 우리나라가 과실범을 규정하는 형식이 다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라는 부분으로 과실범의 행태가 다 포괄되어 책임범위가 축소된 것이 없는데, 그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전주혜위원)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전혀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이렇게 해서 계류가 된다면 이는 명분 없는 계류임.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강제실종범죄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집단에 소속된 강제실종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강제실종행위자등”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 기관의 행위 또는 반국가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하는 행위도 강제실종행위자등의 행위로 본다.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이하 “자유박탈”이라 한다)한 후 그 자유박탈 사실 또는 자유박탈을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생존여부,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 2. “강제실종범죄”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3. “강제실종범죄피해자”란 강제실종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강제실종피해자”란 강제실종범죄피해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 안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법의 기본이념으로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할 것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강제실종', '강제실종범죄', '강제실종범죄피해자' 및 '강제실종피해자' 등을 규정함.

'강제실종'은 이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제한, 민사 배상 등 제정안이 규정하려는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안 제3조제1호 단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제법상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가'임이 인정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나, 국내 법원의 해석상 '국가'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행위가 포섭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7][8]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반국가단체'라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

7) 이 경우 북한 정권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비국가행위자'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 '정치단체'와 달리 범죄 주체의 해석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또 제3조 정의 규정상 강제실종행위의 주체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한 것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협약의 원래 적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내에 통용되는 법이론 및 체계와 조화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함.

8) (법무부 최초 수정안) 다만,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행위,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하는 행위도 "강제실종행위자등"의 행위로 본다.

면서도, 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행위,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행위자가 아니라 비국가행위자의 행위도 ‘강제실종’에 포섭하는 것으로, 이는 협약의 정의보다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 ② 또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법무부**는 국제법상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상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엔 차원에서 이미 북한의 납북행위를 강제실종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이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정의보다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은 「국가보안법」에도 규정되어 있어 해석 적용에 있어 불명확성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정안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감안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제외한 것으로 보임.

나. 강제실종범죄 관련 적용범위(안 제4조)

제4조(강제실종범죄 관련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안 제4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로서 ① 국내범(속지주의), ② 내국인의 국외범(속인주의), ③ 국외의 국적선박 등에서 외국인의 범죄(기국주의)를 규정하고, ④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인, ⑤ 국외범 중 국내 체류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형법」[9]에 따르면, 국외범인 외국인은 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당 범죄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하거나, ② 통화에 관한 죄 등 특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강제실종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이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적용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9)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 2. 외환의 죄 / 3. 국기에 관한 죄 / 4. 통화에 관한 죄 /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안 제5조～제6조)

제5조(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 이외의 강제실종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범죄 피해자의 생존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기산한다.

○ 안 제5조는 강제실종(범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인도에 반한 죄 등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안 제6조는 '강제실종 살해·치사죄'(안 제10조)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제1항), 이외의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범죄행위의 종료 시와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생존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제2항).

이에 대해서는 「강제실종보호협약」 제8조[10]는 강제실종범죄의 공소시효를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장기간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할 뿐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임.

---

10) **「강제실종보호협약」 제8조** 제5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1. 강제실종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형사절차상의 시효 규정이 다음과 같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장기간이 되고, 이 범죄의 극도의 심각성에 비례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강제실종 살해·치사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안 제6조제1항에 대해서는 강제실종범죄는 반인도적인 범죄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성격상 범죄시로부터 근접하게 기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점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국의 의무, 강제실종 사실이 은폐될 수 있는 국가주도범죄의 특징, 법익침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구제 필요성과 국내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국가기관등 및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라. 강제실종범죄(안 제7조～제12조)

제7조(강제실종죄)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강제실종행위자등은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강제실종행위자등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실종자수수・은닉죄) 제7조제1항의 죄로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제실종 상해・치상죄) 제7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제실종 살해・치사죄) ① 제7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미수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예비, 음모)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강제실종죄 및 실종자수수·은닉죄, 상해·치상죄, 살해·치사죄와 미수, 예비·음모죄 등으로 열거함.

법무부는 안 제10조(강제실종상해·치상), 제11조(강제실종살해·치사)의 구성요건은 “강제실종된 사람을 (살해 등)한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8조, 제9조 및 형법 규정 체계에 맞게 “～한 사람”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상급자의 책임등, 형의 감경(안 제13조～제14조)

제13조(상급자의 책임등) ① 단체·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 2. 강제실종범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하여 관할 당국에 사건을 통보 ②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의 제10조의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국제법에 따른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형의 감경)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생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규명에 기여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안 제13조는 단체 · 기관의 상급자가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휘관이나 상급자를 그 강제실종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제1항),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하급자의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2항).

안 제13조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하급자의 '강제실종 범죄행위'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그 상급자를 처벌 대상으로 보는 「강제실종보호협약」 제6조[11]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동 협약의

이행법률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적정하다고 보이나,

'실효적인 지휘·감독',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 등에 대한 범위 또는 구별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정안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현행 국제형사범죄법은 집단살해죄등에 대해 상급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12)]

○ **법무부**는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11) **「강제실종보호협약」제6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해당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강제실종을 저지르거나, 명령하거나, 권유 또는 교사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범이 되거나, 참여하는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상급자
      (1) 자신의 실효적인 권한과 통제 하에 있는 하급자가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명백히 드러난 해당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2)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그리고
      (3) 강제실종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필요하고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수사와 기소를 위해 관할 당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다. 위의 나호는 군지휘관이나 실질적으로 군지휘관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한 관련 국제법상 적용 가능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공당국, 민간, 군대 또는 여타의 명령이나 지시도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주장될 수 없다.

1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① 정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따른 자기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경우에는 명령이 명백한 불법이 아니고 그 오인(誤認)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본다.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되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제6조제1항 나목에서도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고 있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을 규정한 국제형사범죄법 제5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바. 강제송환 등의 금지(안 제15조)

제15조(강제송환 등의 금지) 국가는 강제실종이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15조는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를 해외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함.

이에 대해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ㆍ송환하거나, 인도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13]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강제실종보호협약」 제16조
1. 어느 당사국도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강제 송환"), 인도 또는 범죄인인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제16조)

제1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3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안 제16조는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나, 강제실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해당 범죄의 비인도성 및 배상청구권이 적시에 행사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어 보임.

○ **법무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유사 특례는 체내 성분 작용기간, 인과관계 입증 곤란 등 특별한 고려의 결과인 반면, 강제실종과 사안 성격이 유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는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강제실종범죄가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3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보다 지나치게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 기타 및 부칙

제17조(국가의 구제의무) 국가는 강제실종피해자의 재활, 명예회복, 사회복귀 등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아동의 보호) 국가는 강제실종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의 구제의무 및 아동의 보호 조항은 그 목적이 강제실종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부칙 시행일의 경우 제정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법률로써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이 이미 발효(2023. 2. 3.)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한역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A. res. 61/177, U.N. Doc. A/RES/61/177 (2006), adopted Dec. 20, 2006.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인권, 인도법, 국제형사법 분야의 다른 관련 국제문서들을 상기하고,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1992년 12월 18일 결의 제47/133호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또한 상기하고,
범죄에 해당함은 물론, 국제법상의 일정한 상황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강제 실종의 극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제실종을 방지하며, 강제실종 범죄의 불처벌과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정의와 배상에 대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고려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강제실종의 상황과 실종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와 이 목적을 위한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다음 조항들에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1. 누구도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전쟁 또는 전쟁 위협의 상태, 국내적 정치의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

태 등 어떠한 예외상황이라도 강제실종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실종”이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과, 그에 이어서 자유 박탈의 시인을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은폐함으로써,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없이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저질러진 제 2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이 자국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강제실종의 실행은 현행 국제법상 같이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며, 현행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해당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강제실종을 저지르거나, 명령하거나, 권유 또는 교사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범이 되거나, 참여하는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상급자
(1) 자신의 실효적인 권한과 통제 하에 있는 하급자가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명백히 드러난 해당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2)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그리고
(3) 강제실종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필요하고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수사와 기소를 위해 관할 당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다. 위의 나호는 군지휘관이나 실질적으로 군지휘관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한 관련 국제법상 적용 가능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공당국, 민간, 군대 또는 여타의 명령이나 지시도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7조
1.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 범죄를 이의 극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강제실종의 범행에 관련되었지만, 특히 강제실종된 자를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강제실종 사건의 내용을 밝힐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강제실종의 범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해 형의 감경
나. 다른 형사절차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실종자가 특히 사망한 경우나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특히 다른 취약자의 강제실종은 가중 처벌

제8조
제5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1. 강제실종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형사절차상의 시효 규정이 다음과 같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장기간이 되고, 이 범죄의 극도의 심각성에 비례하도록 한다.
나. 강제실종 범죄의 계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범죄가 종료한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시효기간 동안 강제실종의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국 관할 하의 영역이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경우
나. 범죄 용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다. 실종자가 자국민이고, 당사국이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범죄 용의자가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 있을 때, 국제적인 의무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거나 송환하지 않는 한, 혹은 당사국이 인정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범죄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추가적인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1. 입수가능한 정보를 조사한 후 상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강제실종 범죄를 범한 용의자가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를 구금하거나 또는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타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과 여타의 법적 조치는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형사절차 또는 인도나 범죄인인도 절차에 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다.
2. 이 조의 제 1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즉시 실시한다. 그리고 구금사실 및 구금을 정당화하는 사정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와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여 예비 조사 또는 수사의 결과를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이 조의 제 1항에 따라 구금된 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적절한 본국의 대표자나, 만약 그가 무국적자라면 그가 주로 거주하는 국가의 대표자와 즉시 연락할 수 있다.

제 11조
1. 강제실종 범죄를 범한 용의자 발견된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당사국은 그를 범죄인인도를 하거나, 국제적 의무에 따라 타국으로 인도하거나, 당해국이 관할권을 수락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는 한, 기소의 목적으로 관할기관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2. 관할기관은 해당 당사국의 국내법상 심각한 성격의 일반 범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9조 제 2항에 규정된 사건에서의 기소와 유죄평결에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제 9조 제 1항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결코 완화되지 않아야 한다.
3.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모든 사람은 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제 12조
1. 각 당사국은 누군가가 강제실종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사실

을 관할 기관에 보고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그 주장을 즉시 그리고 공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인, 증인, 실종자의 친인척, 그의 변호인은 물론 수사에 참여하는 자가 고발 또는 제출된 증거를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나 협박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져야 한다.
2. 누군가가 강제실종을 당했다는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조의 제 1항에 언급된 기관은 공식적인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실시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 1항에 언급된 기관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갖는다.
나. 어떠한 구금 장소 또는 실종자가 소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기타 다른 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은 이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특히 고발인, 증인, 실종자의 친인척, 그의 변호인, 또는 수사 참여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의 압력 또는 행사를 통하여 강제실종 범죄의 용의자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제 13조
1. 당사국간 범죄인인도의 목적상 강제실종 범죄는 정치범이나 정치범과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요구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거절될 수 없다.
2. 강제실종 범죄는 이 협약이 발효되기 전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 조약에서도 인도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당사국은 향후 당사국간에 체결되는 범죄인인도 조약 속에 강제실종 범죄를 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다.
4.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바 없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았다면,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는 이 조약을 범죄인인도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5.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들은 강제실종 범죄가 그들 간의 인도 가능한 범죄로 승인한다.
6. 범죄인인도는 모든 경우에 피청구국의 법률이나 적용 가능한 범죄인인도 조약에 규정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에는 특히 범죄인인도에 관한 최저 형기요건과 관련된 조건과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부하거나 이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다.

7. 만약 청구가 대상자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민족적 출신,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그를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청구의 이행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피청구국이 갖고 있다면, 이 협약상의 어떠한 내용도 범죄인인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조

1. 당사국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국 재량하의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강제실종 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최대한의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2. 이 같은 사법공조는 피청구국의 국내법이나 사법공조에 관한 해당 조약상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이에는 특히 피청구 당사국이 사법공조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거나 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와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다.

제 15조

당사국들은 강제실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한 실종자를 수색하고, 소재를 확인하고, 석방시키며, 사망의 경우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반환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하며, 상호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 16조

1. 어느 당사국도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강제 송환”), 인도 또는 범죄인인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할기관은 이 같은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관련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하거나, 극악하거나,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제 17조

1. 어느 누구도 비밀 구금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2. 자유의 박탈에 관한 당사국의 다른 국제적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 국내법에 다음을 행한다:

가. 자유박탈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다.

나. 자유박탈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적시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감독되는 자유박탈의 장소에만 수용될 것을 보장한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만 규제를 받으면서 그의 가족, 변호인 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방문 받을 것이 허용되며, 만약 그가 외국인이라면 현행 국제법에 따라 자신의 영사 당국과의 연락이 허용될 것을 보장한다.
마. 만약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라도,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권한 있고, 법적으로 허용된 당국과 기관의 접근을 보장한다.
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자 또는 강제실종이 의심 되는 사건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친인척,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같은 합당한 이해관계자가 법원이 지체 없이 자유박탈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만약 그 자유박탈이 합법적이 아니라면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하여 한 개 이상의 최신 공식 등록부와 기록을 축적하고 보존할 것을 보장하며, 이는 요청이 있으면 사법기관 또는 관련 당사국의 법이나 그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관련 국제문서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허용받은 다른 관할기관이나 기구에 즉시 제공된다. 이에 수록되는 정보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신원;
나. 그가 자유를 박탈당한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의 자유를 박탈한 기관;
다. 자유 박탈을 명령한 기관과 자유 박탈의 근거;
라. 자유 박탈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
마. 자유 박탈의 장소, 자유 박탈의 장소로 입소한 날짜와 시간, 자유 박탈의 장소를 책임지는 기관;
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사항;
사. 자유 박탈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의 상황과 원인, 그리고 유해를 행선지;
아. 석방 또는 다른 구금 장소로 이송된 날짜와 시간, 행선지, 이송을 책임지는 기관.

제 18조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친인척,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같이 이런 정보에 합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최소한 다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가. 자유 박탈을 명령한 기관;
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 박탈의 장소에 입소한 날짜, 시간, 장소;

다. 자유 박탈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
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소재, 이에는 또 다른 자유 박탈의 장소로 이송된 경우 그 행선지와 이송을 책임지는 기관을 포함한다;

마. 석방의 날짜와 시간 및 장소;
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항;
사. 자유 박탈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의 상황과 원인 그리고 유해의 행선지.
2.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로 인하여 이 조의 제 1항에 규정된 자는 물론 조사에 참여한 자가 부당한 대우, 위협 또는 제재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19조
1. 의학적, 유전적 정보를 포함하여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집되고 전달되는 개인 정보는 실종자의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것이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한 형사절차나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의학적, 유전적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보관이 개인의 인권, 기본적 자유 또는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제20조
1. 당사자가 법률의 보호 하에 있고, 자유의 박탈이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18조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단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정보의 전달이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법률에 따른 다른 동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현행 국제법 및 이 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2조에서 규정된 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면서 제18조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유 박탈의 합법성 검토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은 제18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보를 지체없이 획득할 방안으로서 제 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구제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지되거나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실제로 석방되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석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석방 시 그들의 신체적 완전성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며, 이는 그들이 자국법을 준수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 6조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제17조 제 2항 바호과 제 20조 제 2항에 규정된 구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나. 어떤 자에 대한 자유 박탈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식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그대로 기록하는 행위;

다. 자유 박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 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3조

1.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자의 구금과 처우에 관여하는 법집행 요원, 민간인 또는 군인, 의료인, 공무원과 기타 사람들의 훈련에 이 협약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가. 그 같은 요원들이 강제실종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함;

나. 강제실종과 관하여 예방과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 강제실종 사건 해결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을 보장함.

2.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을 지시하거나 허가하거나, 조장하는 명령이나 지시가 금지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 1항에서 규정된 사람이 강제실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상급자나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나 구제 권한을 가진 적절한 기관 또는 기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24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란 실종자와 강제실종의 직접적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의미한다.

2. 각 피해자는 강제실종의 상황과 수사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실종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위치를 확인하며, 석방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망 시에는 그 유해를 발견하고, 경의를 표하며, 반환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법제도상 강제실종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
5. 이 조의 제 4항에 규정된 배상을 받을 권리는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는 물론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배상도 포함한다:
가. 원상회복;
나. 재활;
다. 존엄성과 명예의 회복을 포함한 만족;
라. 재발방지의 보장.
6. 실종자의 운명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각 당사국은 사회복지, 재정문제, 가족법 및 재산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그의 운명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와 그의 친인척들의 법적 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의 상황과 실종자의 운명을 확인하고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는 기구나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25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고 형법상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강제실종된 아동, 그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강제실종 된 아동 또는 강제실종을 당한 어머니가 감금 도중에 낳은 아동을 불법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나. 위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들의 정확한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 은닉 또는 파기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법절차와 현행 국제조약에 따라 이 조의 제 1항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을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그를 원래의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들은 이 조의 제 1항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들을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소재를 찾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4. 이 조의 제 1항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고하고, 국적, 성명, 법률적 가족관계를 포함한 그들의 신원을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 입양 또는 다른 형태의 아동 소개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들은 입양 또는 소개 절차를 재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강제실종에서 유래

된 아동의 입양이나 소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 조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가질 능력이 있는 아동은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는 그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으로 인정받는다.

제2부

제26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제실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과 인권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이며 공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배분에 따라 당사국들이 선출한다. 관련 법률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위원회 업무에의 참여와 균형 있는 성별 대표의 유용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2년마다 소집되는 당사국 회의에서 당사국들이 자국민 중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명단으로부터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당사국 3분의2를 정족수로 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 절대 과반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위원회에 선출된다.
3.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된다. 각 선거 일 4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후보자를 추천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이렇게 추천된 자를 알파벳순으로 명단을 준비하여, 이 명단을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들은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이 다섯 명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이 조의 제 2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의 추첨으로 선정된다.
5.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그를 추천한 당사국은 이 조의 제 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그 임기를 담당할 다른 후보를 자국민 중에서 지명하며, 그는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시된 지명을 통보 받은 지 6주 이내에 과반수 당사국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 시설을 제공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한다.
8. 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의 임무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편의 및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9.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수락한 위원회의 직무 범위 내에서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들의 임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 27조
위원회의 업무를 평가하고 또한 제 28조에서 제 36조까지 규정된 직무에 따른 협약의 감독기능을,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제 44조 제 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발효 후 4년 이후, 6년 이내에 당사국 회의가 개최된다.

제 28조
1. 이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 내에서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관련 기관, 사무소, 전문기구, 기금, 국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조약기구, 국제연합의 특별절차, 관련 지역적 정부간 기구는 물론 강제실종 방지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 기구 또는 사무소와 협력한다.
2. 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인권문서에 의해 설립된 다른 조약기구,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설립된 인권위원회와 각각의 견해와 권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2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하여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이 보고서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논평, 견해 또는 권고를 한다. 이 논평, 견해 또는 권고는 해당 당사국에 전달되며, 관련 당사국은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에 답변할 수 있다.
4.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0조

1. 실종자를 수색하고 발견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실종자의 친인척, 그의 법률상 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들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물론 정당한 이해관계를 자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긴급 사안으로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 1항에 따라 제출된 긴급조치의 요청이 다음과 같다고 고려하면:
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 그러한 요청 제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과 같은 해당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이미 적절히 제출되었고;
라. 이 협약의 조항들과 충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 동일한 문제가 같은 성격의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 또는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지 않다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위원회가 정한 시한 내에 찾는 사람들의 상황에 관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3. 이 조 제 2항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위원회는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하고, 구체적 시한 내에 취하여진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담은 권고를 당사국에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조치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권고내용과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입수되면 이를 알려준다.
4. 위원회는 찾는 사람의 운명이 미해결로 남아있는 한, 관련 당사국과의 협력 노력을 계속한다. 요청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계속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협약의 비준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자국의 관할권 하의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당사국에 의한 협약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
가. 통보가 익명인 경우;
나. 통보가 그러한 통보를 제출할 권리의 남용이거나, 이 협약의 조항들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다. 동일한 문제가 같은 성격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는 경우; 또는

라. 모든 실효적이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구제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가 통보가 이 조의 제 2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통보를 전달하고,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견해와 논평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4. 통보를 접수한 이후 본안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위원회는 주장되고 있는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임시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도록 하는 요청을 관련 당사국에게 긴급 고려사항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재량행위의 발동이 그 통보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리할 때는 비공개 회의로 한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응답을 통보자에게 알려준다. 위원회가 그 절차의 종료를 결정하면, 당사국과 통보 제출자에게 위원회의 견해를 전달한다.

제 32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또 다른 당사국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한다는 선언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통보를 수리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의 통보도 수리할 수 없다.

제 33조
1. 위원회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알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과 협의한 후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에게 지체 없이 당사국을 방문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대표단 구성과 방문 목적 등을 명시하여 방문하려는 의사를 해당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당사국은 위원회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위원회에 답변한다.
3. 당사국의 구체화된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방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그 방문에 동의하면, 위원회와 관련 당사국은 방문의 형식을 함께 정하고, 당사국은 그 방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위원회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5. 방문 이후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자신의 견해와 권고를 통보한다.

제 34조

위원회가 당사국의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강제실종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의 징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황에 관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요구한 다음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긴급히 환기할 수 있다.

제 35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 관하여만 권한을 가진다.
2. 어떤 국가가 이 협약 발효 후에 당사국이 되는 경우, 위원회에 대한 그 국가의 의무는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 36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연례 활동보고서를 당사국들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2. 어느 당사국에 대한 견해가 연례보고서에 공표되기 전에, 해당 당사국은 미리 통지를 받으며, 답변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그 당사국은 자신의 논평이나 견해를 보고서에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부

제 37조
이 협약은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보다 도움이 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각 당사국의 법;
나. 그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

제 38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비준의 대상이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 39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한다.

제 4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 3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 39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제 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42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 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 중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만약 중재재판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이 중재재판의 구성을 합의할 수 없다면, 분쟁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국가는 이 조 제 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에 관하여는 다른 당사국도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 2항에 따른 선언을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로써 그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43조
이 협약은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6월 8일자 2개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를 포함하는 국제인도법의 규정이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속의 구금 장소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방문하도록 당사국이 허가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4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당사국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들에게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3. 이 조 제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4. 개정이 발효되면, 이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다른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들이 수락한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을 받는다.

제 45조
1. 이 협약은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제 3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들에 송부한다.